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02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최은석・김위상・성일종

고동진 • 조지연 • 정동만

송언석 • 이인선 • 서일준

이성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지급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여 그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마약류 관련 범죄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보유·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마약류범죄이용계좌의 지급정지

- 제79조(지급정지) ①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수수 ·보유·은닉에 활용된 계좌(이하 "마약류범죄이용계좌"라 한다)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해당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즉시 해당 마약류범죄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마약류범죄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

의인"이라 한다)

- 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79조에 따라 지급 정지가 된 마약류범죄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2 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 4. 질권(質權)의 설정
- 제81조(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해당계좌가 마약류범 죄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한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한 수사기관에 이의제기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은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심사함에 있어 해당 계좌가 마약류범죄이용계좌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견 조회 후 2개월 이 경과할 때까지 그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2조(지급정지의 종료)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범죄이용계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제81조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의 결과 지급정지의 종료가 결정된 경우
 - 2.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수사기관이 그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 3. 지급정지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마약류범죄이용계좌와 관련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과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한 마약류범죄

와 관련되는 계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장 마약류범죄이용계좌의
	지급정지
<u><신 설></u>	제79조(지급정지) ① 불법수익 또
	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의 수수·보유·은닉에 활용된
	계좌(이하 "마약류범죄이용계
	좌"라 한다)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즉시 해당 마약류범죄이
	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
	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
	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
	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

<신 설>

- 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마

 약류범죄이용계좌의 명의인

 (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 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급정지의 요청·절차·통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80조(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79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마약류범죄 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의 제기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의 개시
 - 4. 질권(質權)의 설정

<신 설>

제81조(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 기) ① 명의인은 해당계좌가 마약류범죄이용계좌가 아니라 는 사실을 소명하여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한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한수사기관에 이의제기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견 조회를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심사함에 있어 해 당 계좌가 마약류범죄이용계좌 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 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견 조회 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회신이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지급정지의 종료) ① 금융 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신 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 범죄이용계좌에 대하여 이 법 에 따른 지급정지를 종료하여 야 한다.

- 1. 제81조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의 결과 지급정지의

 종료가 결정된 경우
- 2.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 이 없게 되어 수사기관이 그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 3. 지급정지 개시일부터 3년 이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마약류범죄이용계좌와 관련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기소중지 또는 참고 인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과 지급정지를 요 청한 수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